의안번호	2208740
의 뢰 인	김한규의원
회 답 일	2025.3.24.
추계번호	24D134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Ⅰ.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 (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7조 (의료지원)	독립유공자의 유가족이 국가의 의료기관(보훈병원 포함)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하게 할 수 있게 함(안 제5항 전단) 그 진료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되,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음(안 제5항 후단)	

Ⅱ.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근거규정
1	안 제17조 (의료지원)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진료인원과 진료단가의 변동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으므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

2. 상세사유

- ❑ 개정안은 독립유공자의 유가족이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보훈병원에서 국가의 의료기관 전체로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 독립유공자의 유가족이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확대할 경우, 의료기관으로의 접근이 쉬워짐에 따라 진료비 지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훈병원의 진료인원은 감소하고, 다른 국가 의료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의료기관별 진료인원의 변동 규모나 진료비 단가를

합리적으로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

- ❑ 따라서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진료비 지원의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 ❑ 참고로, 2023년 11월 기준 보훈병원은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 등 6개 대도시 지역에 설치·운영 중이고, 위탁병원은 전국 678개 병원이 지정되어 있으며, 2023년 기준 의료지원 총액은 7,008억 5,500만원임

[표 1]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현황: 2023.11월 기준

구분		중앙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	소계 (평균)
개원일 (현위치이전일)		1953.2월 (1983.8)	'84.4월 (1992.5)	1987.4월	1993.2월	1997.11월	2018.8월	
병상수	허가병상	985	445	561	475	383	137	2,986
	운영병상	973	375	484	425	272	137	2,666
진료 과목	직제	31개	21개	24개	22개	20개	15개	133개
	운영	30개	27개	28개	20개	28개	17개	150개
환자수	외래(日)	4,538	2,139	1,734	1,815	1,614	566	12,406
	입원(日)	571	348	326	354	219	38	1,856
의료인력	의사	147	70	28	62.5	51	17	376
	간호사	811	327	349	298	253	96	2,134
	전공의	100	11	10	2	5	0	128
인력 구성	정원	2450	851	823	754	623	295	5,796
	현원	2512	873	925	777	679	294	6,060
인력운영비율 (정원대비,%)		102.5%	102.6%	112.4%	103.1%	109.0%	99.7%	(104.9%)
진료 권		서울,경기, 강원	부산,경남, 제주,울산	광주, 전남북	대구,경북	대전 ,충남북	인천, 경기서부	
위탁병원 수('23.11)		203	132	124	82	85	52	678

자료: 국가보훈부 연구용역, 「준 보훈병원 지정 및 의료이용 예측모형 개발」, 2024.2

[표 2] 의료지원 현황: 2019~2023년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증가율
보훈 병원	진료비(백만원)	387,220	378,232	394,265	382,915	428,394	2.6
	진료인원(명)	4,450,761	4,025,549	4,008,853	3,738,485	3,925,767	△3.1
	진료단가(원)	87,001	93,958	98,349	102,425	109,124	5.8
위탁 병원	진료비(백만원)	253,350	249,373	247,932	246,698	272,461	1.8
	진료인원(명)	4,444,056	4,040,404	3,710,866	3,566,577	4,014,218	△2.5
	진료단가(원)	57,009	61,720	66,812	69,169	67,874	4.5
합계	진료비(백만원)	640,570	627,605	642,197	629,613	700,855	2.3
	진료인원(명)	8,894,817	8,065,953	7,719,719	7,305,062	7,939,985	△2.8
	진료단가(원)	72,016	77,809	83,189	86,189	88,269	5.2

자료: 국가보훈부

Ⅳ. 부대의견

❑ 해당사항 없음

Ⅴ.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장삼열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삼열	02-6788-4831	jsy@assembly.go.kr